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리도시공사 귀하

귀사와의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p>[필수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 건강관련정보 : 채용절차상 신체검사 대상자에 한함 <p>[선택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가족사항(가족의 성명, 관계, 학력, 직업, 연령), 경력사항, 성적(외국어)·자격사항, 학력사항, 특별사항(병역, 장애, 보훈사항), 특기, 취미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우대자격 인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p>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p>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민감정보 동의 여부	<p>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신체검사 등 채용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 건강관련정보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미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미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리도시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이의신청 내용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 문의 및 질의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류전형 심사기준 (일반직)

평가요소		평가점수		평가세부내역	
항목	총점	기준	배점		
계	100				
행정직	경력	55	기본경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의거 응시자격 충족시 배점 부여 (단, 별도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배점 부여) ▪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경력 1년당 1점 부여
			초과경력	5	
	자격증	5	컴퓨터활용능력 1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중복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3	
	자기소개서	40	직무적합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경력/경험으로 평가 ▪ 직무와 관련된 교육 등 자기개발노력 평가 ▪ 분량 미준수, 타사명, 중복, 오타 등 평가 - 10점(1-2개) · 8점(3-4개) · 6점(5개이상)
			자기개발노력	15	
성실기재여부			10		
기술직	경력	45	기본경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의거 응시자격 충족시 배점 부여 (단, 별도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배점 부여) ▪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경력 1년당 1점 부여
			초과경력	5	
	자격증	15	기술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중복 :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기사	10	
			산업기사	5	
	자기소개서	40	직무적합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경력/경험으로 평가 ▪ 직무와 관련된 교육 등 자기개발노력 평가 ▪ 분량 미준수, 타사명, 중복, 오타 등 평가 - 10점(1-2개) · 8점(3-4개) · 6점(5개이상)
자기개발노력			15		
성실기재여부			10		
역무직	경력	60	기본경력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규정 의거 응시자격 충족시 배점 부여 (단, 별도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배점 부여) ▪ 응시자격을 초과하는 경력 1년당 1점 부여
			초과경력	5	
	자기소개서	40	직무적합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경력/경험으로 평가 ▪ 직무와 관련된 교육 등 자기개발노력 평가 ▪ 분량 미준수, 타사명, 중복, 오타 등 평가 - 10점(1-2개) · 8점(3-4개) · 6점(5개이상)
			자기개발노력	15	
			성실기재여부	10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우대조건)을 두는 경우, 해당 점수를 가산하며, 점수가 100점을 초과할 경우 100점으로 교정 		